

제 1 0 차 전 력 수 급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2. 9



산업통상자원부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2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2
1.3 계획의 추진경위	3
1.4 계획의 주요내용	3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4
2.1 환경보전목표	5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6
3.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7
3.2 항목별 대상지역	7
 제4장 대안의 설정	 8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9
4.2 대안의 검토	11
 제5장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12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13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4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5
6.2 행정예고 실시	15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6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17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8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1.3 계획의 추진경위
 - 1.4 계획의 주요내용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1.1.1 계획의 목적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
- *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 계획의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력산업을 둘러싼 경제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발전설비계획 및 송·변전설비계획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기적으로 반영 필요

1.1.3 계획의 추진방향

- 경제성장, 기온변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화, 4차 산업혁명 영향 등을 고려한 전력수요 전망
-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 및 에너지절감 제도, 프로그램 등 수요관리 수단 제시
- 친환경적·경제적인 중장기 전원믹스 제시
-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시
-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변동성 대응 및 계통 운영방안 마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대상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1.3.1 추진경위

- 2021.12.17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2021.12 ~ :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전력수요 및 설비계획 관련 주요 내용 논의·검토 중
- 2022.08.30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언론 브리핑
- 2022.09.14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제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4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명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2022~2036년
- 2)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수립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라.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 계획의 내용

-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환경 목표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반영하였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 및 환경보전목표에서 제외함

[표 2.1-1]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 국제 기후변화협약·규범 및 전 세계적 탄소중립 동향과의 정책 부합성 확보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 친환경 전원믹스 구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수요·공급	○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력수요 전망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적 수요관리 수단 반영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 친환경 전원믹스 구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 제시 ○ 2022~203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제시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3.2 항목별 대상지역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송전·변전설비 구성을 다루는 정책계획이므로, 행정구역상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함

3.2 항목별 대상지역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관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 및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함

[표 3.2-1] 항목별 대상지역

구 분		평가대상지역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대한민국 전역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약		대한민국 전역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대한민국 전역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본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수요·공급		대한민국 전역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대한민국 전역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4.2 대안의 검토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정책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아래 표에 제시된 6개의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요·공급, 수단·방법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비교 대안을 설정함
- 수단·방법 대안은 계획비교 대안의 내용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 제시를 통해, 수요·공급 대안은 계획비교 대안의 내용 중 전력 수요관리와 발전설비 구성을 통해 검토가 가능하므로 대안 간 중복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비교 대안을 통해 종합 검토하기로 함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4.1-2] 대안의 설정

구분	검 토 방 법
계획비교	▶ 대안 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Action) - 2030 NDC 상향안(온실가스 1.499억톤)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구성·운영방안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방안 ▶ 대안 2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Action) - 2030 NDC 상향안 목표(온실가스 1.499억톤)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구성·운영방안 ▶ 대안 3 : 현 상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유지(No Action) - 기존 2030 NDC 목표(온실가스 1.927억톤)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구성·운영방안

[표 4.1-3] 대안의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 제외 사유
수단·방법	○ 계획비교 대안의 내용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 제시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므로 중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수요·공급	○ 계획비교 대안의 내용 중 전력 수요관리와 발전설비 구성을 통해 검토 가능하므로 중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입 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입지에 따른 대안 설정은 제외하였음 ○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 대안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시기·순서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개발 시기·순서를 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시기·순서에 따른 대안 설정은 제외하였음

4.2 대안의 검토

-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하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한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포함하여 대안의 검토내용을 선정하였음

4.2.1 계획비교

[표 4.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평가영역	대안 1	대안 2	대안 3
수요관리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 16.9GW 절감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 15.9GW 절감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 14.8GW 절감
발전설비 구성	'36년까지 석탄 28기 폐지 (26기 LNG 전환) 원자력발전 계속운전 및 신규 건설	'36년까지 석탄 26기 폐지 (24기 LNG 전환) 원자력발전 계속운전 및 신규 건설	'36년까지 석탄 26기 폐지 (24기 LNG 전환)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 설비축소, 필요시 발전량 제약 무탄소연료(수소·암모니아) 혼소 추진	석탄발전 설비축소, 필요시 발전량 제약	석탄발전 설비축소, 필요시 발전량 제약
미세먼지 감축	고농도시 상한제약, 계절관리제 실시,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 실시	고농도시 상한제약, 계절관리제 실시	고농도시 상한제약, 계절관리제 실시
재생에너지 확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행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용 ESS 등 도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행	「재생에너지3020」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행
선 정 안	○		

제5장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설정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설정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공간계획의 적정성만을 제외하고 전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평가방법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등 협의회 심의 결과와 추가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함

[표 5.1-1]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대한민국 전역	○ 자료·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정과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검토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약	대한민국 전역	○ 자료·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 -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검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전역	○ 자료·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검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대한민국 전역	○ 계획 검토 - 계획의 목표와 세부 내용이 일관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수요·공급	대한민국 전역	○ 자료·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 - 수요전망, 수요관리, 설비계획 등을 타당하게 수립하였는지 검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대한민국 전역	○ 자료·문헌조사 및 계획 검토 - 환경용량,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6.2 행정예고 실시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관하여 주민 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6.2 행정예고 실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개최일시 : 2022.09.14(수) 10:00~11:30
- 개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5층 대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 심의(불참위원에 대하여 서면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09.05~2022.09.14(평가준비서 사전검토 및 서면의견 수렴기간 포함)
- 심의내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총 위원 16인 중 과반수 이상인 10인 참석으로 개최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 서면의견 및 협의회 대면 심의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표 7.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비 고	참석여부
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강 0 0	위원장	○
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박 0 0	수립기관	○
3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노 0 0	수립기관	○
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권 0 0	수립기관	○
5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서 0 0	협의기관	○
6	환경부 기후전략과	최 0 0	협의기관	○
7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박 0 0	협의기관	×
8	전력거래소	김 0 0	산업부 추천위원	○
9	한국환경연구원	김 0 0	환경부 추천위원	×
10	송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송 0 0	외부전문가	○
11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 0 0	외부전문가	×
12	환경영향평가협회	최 0 0	외부전문가	○
13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이 0 0	지방자치단체	×
14	경기 환경운동연합	김 0 0	지역 시민단체 · 주민대표	×
1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임 0 0	지방환경관서	○
16	기후변화센터	김 0 0	시민단체	×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7.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본 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국정과제(88번)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27년 40%대 목표),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지역·사업·이해당사자 등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환경과 경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함

7.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에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의 진입 및 발전소의 입지, 건설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 공급 가능성, 입지 가능성 등을 병행 검토 하여야 함
- 항목별 대상지역에서의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이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7.2.3 대안의 설정

- 평가준비서에서 제안한 대안은 수요·공급, 수단·방법을 포함하여 계획비교 대안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설정한 평가영역을 비교할 때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제시 하여야 함
 - (수요·공급) 전력 수요전망 및 공급분석 시 예측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시나리오별로 근거를 들어 검토하여야 함
 - (수단·방법) 평가영역별로 전원믹스, 정책·제도 등 수단·방법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시나리오별로 근거를 들어 검토하여야 함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른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대한 확보 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포함하여야 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본 계획의 발전설비 대상 및 범위가 동일한지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의 보완이 필요함

-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고농도시 상한제약과 더불어 가동정지를 포함하여야 함
- 무탄소연료(수소·암모니아) 혼소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용 ESS 외에 계통안정수단으로서 양수, 원자력, P2G 등 대안들을 목록화하여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제9차,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차이에 관한 대안의 내용에 있어 원자력발전, 새정부 에너지정책 관련 지향하는 목표가 필요함
- 원자력발전 계속운전 및 신규 건설 관련하여 EU의 「보완기후위임법」상 원자력 관련 전제 조건을 고려한 대안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7.2.4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 국정과제(88번)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27년 40%대 목표),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실시를 포함하여야 함

나. 계획의 연계성 · 일관성

- 목표수요 및 수요관리 관련하여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연계성 검토를 하여야 함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수요관리 수단 강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 변경에 대한 전력소비량 절감을 반영하고 내역 설명을 보완하여야 함
- 수요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원믹스 등에 대하여 이전 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을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 본 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은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검토하여야 함
-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평가시기, 평가주기, 평가주체와 평가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송전망계획은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를 향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함

7.2.5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2.03.0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자료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개황은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전력수요·공급 현황, 대기질,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전설비, 전력계통 등에 대하여 입지가 예상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환경 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지역개황에서 시·도별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행정계획 등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계획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량화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반영을 통한 환경급전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내용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관련 내용이 충실히 검토되어야 함
- 석탄발전 감축 등 전원 구성 변경에 대하여 지역 특성이 고려된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